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7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철규·박충권·김선교

송언석 • 박상웅 • 이양수

권성동 · 정희용 · 신성범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고안 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
	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